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240011-1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길잡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열린 토론 바른 선택

# 후보자 토론회,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 용어의 표기

### ■ 법규명

「공직선거법」 ▶ 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 규정

### ■ 위원회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중앙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시·도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구·시·군토론위원회

### ■ 토론회명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 ▶ 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책자의 내용을 보다 쉽게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어요!



---

#### TV토론 아카데미

- 1편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 2편 이미지 메이킹 및 스피칭
- 3편 TV토론 실습



※ 본 책자를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http://www.debates.go.kr)) ▶ 홍보자료 ▶ 간행물

# CONTENTS 목차

## 01 선거방송토론위원회란?

### 제1장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위 ..... 11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 11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 12

## 02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이란?

### 제2장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 17
2.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 17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개최 개요 ..... 19

## 0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

### 제3장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 25
2. 초청 후보자(정당) 선정 ..... 26
3. 사회자 선정 ..... 29
4. 토론주제 선정 ..... 30
5. 질문사항 선정 ..... 30
6. 토론진행방식 결정 ..... 31





7. 설명회 개최 .....	33
8.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	35
9.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	37

## 04 후보자(토론자)의 토론회 준비 및 참석

### 제4장

1. 참석확인서 제출 .....	43
2. 설명회 참석 .....	47
3. 토론 진행방식 숙지 .....	49
4. 토론회 준비(이미지 메이킹) .....	51
5. 토론회장 도착 .....	53
6. 리허설 및 최종 점검 .....	55
7. 토론회 진행 .....	56

## 05 참고자료

### 제5장

1.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예시 .....	61
2. 토론진행표(큐시트) 예시 .....	66
3. 사회자 대본 예시 .....	68
4.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	75

2024. 4. 10.(수) 실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2. 12. 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 11.부터 4. 10.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0.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규§136의4, 5
2. 10.부터 4. 10.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1.부터 3. 1.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1.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1.부터 3. 22.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7.부터 4. 1.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②, 규§136의15
3. 27.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3. 28.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8.부터 4. 9.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 중	법§82의2
3. 29.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9.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31.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③,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153①, 규§76
4. 2.부터 4. 5.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5.부터 4. 6.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0.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 규 : 공직선거관리규칙

The background is a vibrant green with several overlapping circles of varying shades and opacities. A large, semi-transparent white circle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partially overlapping the green circle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that contains the number '01' in a bold, green, sans-serif font.

**01**



## 제1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란?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위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제1장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01

## 제1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란?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위

- 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에 따른 ‘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상설기구입니다(법 §8의7①).
- 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 관련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2005헌마415, 2006. 6. 29.).

##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 토론위원회는 법 제8조의7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중앙, 시·도, 구·시·군 3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앙토론위원회를 비롯하여 17개 시·도토론위원회와 252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양성·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법 §8의7②).
  - 중앙 : 11인 이내
  - 시·도 및 구·시·군 : 9인 이내
-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법 §8의7 ②③, 규칙 §9, 10).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 가. 법정 사무

- 법 제82조의2에 따른 토론회에 관한 사무
-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정당법」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나. 토론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무

-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 선거방송토론 진행방식 및 제도연구
- 토론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 강연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 대화를 상징하는 따옴표를 중심으로 토론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논의하는 것을 상징
- 서로 마주보고 있는 따옴표는 토론자 간의 경쟁 구도를 의미



- 4개의 색상과 개체는 토론자의 다양한 견해와 정견, 정책을 의미
- 4가지 색은 빛과 색의 3원색으로 사회의 모든 주요 문제를 토론을 통하여 다룰 수 있음을 표현
- 무지개 순서로 색상을 배열함으로써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색상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독립기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임을 의미



- 사각의 형태는 TV, DMB,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방송미디어와 토론 테이블, 토론의 장을 표현



- 개체들이 겹쳐지는 공간은 다양한 주장 등이 토론을 통하여 공통 분모로 모아지고, 토론이 경쟁만이 아닌 소통과 화합, 사회 갈등 관리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

The image features a teal background with several overlapping circles of varying shades and opacities. A white rectangular area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containing the number '02' in a bold, teal, sans-serif font.

**02**



## 제2장

#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이란?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2.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개최 개요

제2장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각급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선거공영제의 한 부분으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 **후보자(정당)**가 TV를 통해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공약, 정견, 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입니다.
- **유권자**에게는 한자리에서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2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각급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가 있습니다(법 §82의2).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있습니다(법 §81).
- **선거일전 60일**(2. 10., 국회의원선거 기준)부터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있습니다(법 §82).

※ 이와는 별도로 중앙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법 §82의3, 「정당법」 §39).

## | 각급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

주 관	구 분	선 거	초 청	개 회 시 기	횟 수	근 거
중앙 토론회	토론회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법 §82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		2회 이상	
	정책토론회	임기만료 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법 §82의3
	정당정책 토론회	-	정당 대표자 등	연중 (단,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39
시·도 토론회	토론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법 §82의2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 등			
		교육감선거	후보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49
구·시·군 토론회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 연설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			법 §82의2

※ 비례대표선거 토론회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역구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초청합니다.

###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개최 개요

#### 가. 위원회별 주관 토론회

구분	내용	횟수
중앙토론회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토론회	2회 이상
구·시·군토론회위원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1회 이상

**나. 개최근거:**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다. 개최시기:** 선거운동 기간 중(2024. 3. 28. ~ 4. 9.)

**라. 개최시간:** 1회 120분 이내

**마. 개최장소:** 중계주관방송사 스튜디오(여건상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 이용)

**바. 개최방법:** 텔레비전방송을 통한 중계방송

-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합니다(법 §82의2⑩).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82의2⑪).



## 방송사 관련 용어 정리

- **공영방송사** :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을 하는 사업자 (KBS, MBC, SBS, EBS, CBS, 지역민방 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LG헬로비전, CMB, HCN 등)

## 사. 중계방송 방법

### 1) 생방송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칙 §27①).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녹화방송의 경우 내용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 2)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합니다 (법 §82의2②).



**아. 초청대상:**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법 §82의2④)

구분	초청 기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li> <li>•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li> <li>•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li> </ul>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li> <li>•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li> <li>•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li> <li>•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li> </ul>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법 §82의2⑤, 규칙 §23⑧).

The image features a vibrant blue background with several overlapping circles of varying shades and opacities.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frame. Inside this white rectangle, the number '03' is displayed in a bold, blue, sans-serif font.

**03**



### 제3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2. 초청 후보자(정당) 선정
3. 사회자 선정
4. 토론주제 선정
5. 질문사항 선정
6. 토론진행방식 결정
7. 설명회 개최
8.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9.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제3장은  
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03

## 제3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



##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가.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및 중계주관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2024. 3. 28.)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중계방송사, 초청 후보자(정당)에게 통지합니다(규칙 §23①).

나. **후보자(정당)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다. 통지 내용

- 1) 개최 일시·장소, 중계방송방법 등(녹화방송의 경우 중계방송일시 등 포함)

2) 초청후보자(정당)에 통지 시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기한과 불참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본 책자 43쪽 “1. 참석확인서 제출” 참조

## 2 초청 후보자(정당) 선정

가. 시 기 : 선거기간개시일(2024. 3. 28.)까지

나. 선정대상 : 법 제82조의2제4항에 규정된 선정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정당)

다. 선정방법 : 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라.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법 §82의2④)		확인방법
국회 의석수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 현황 (국회 홈페이지)
직전선거 정당 득표율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총람 등
최근 4년 이내 선거의 후보자 득표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만 해당	“후보자등록마감일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총람 등

선정기준(법 §82의2④)		확인방법
언론기관 여론조사 공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 후보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토론회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초청합니다.

### 1)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 중 언론기관 여론조사 관련 질의회답

- 언론기관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하여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한”이란 용어의 의미는 “평균”이란 수의 개수나 양의 크고 작은 차이 없이 고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1개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도 다른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면 그 조사결과의 지지율이 평균이 될 것임(2005.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특정후보자에 대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4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2005.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2) 여론조사 결과 반영기간 :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4. 2. 27. ~ 3. 27.)의 사이에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 3) 언론기관의 범위(규칙 §22)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외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 방송사 관련 용어 정리

- 공영방송사 :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을 하는 사업자 (KBS, MBC, SBS, EBS, CBS, 지역민방 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IPTV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등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대교어린이TV, tvN, 코미디TV등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마.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정당)가 있을 경우

- 1)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정당)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토론회(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 §82의2⑤, 규칙 §23⑧).

※ 이 경우 개최시간은 초청 후보자(정당) 토론회 개최시간 이내에서 후보자(정당)의 수를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2) 각급 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 등이 동의하면**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규칙 §23⑦).

### 3 사회자 선정

**가. 시 기**: 선거기간개시일(2024. 3. 28.)까지

**나. 자 격**: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한 사람(규칙 §23③)

※ 선정된 사회자로부터 ‘사회자 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받습니다.

#### 다. 선정방법

- 추천: 해당 토론위원회 각각의 위원이 사회자 후보를 추천합니다.  
※ 필요시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정 §2①).
- 선정: 추천명단 중에서 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합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서 사회자 후보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토론위원회 검토 및 의결기구 |

구분	구성요건	분야
위원회의	토론회 관리일정에 따라 법정의결사항 또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최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
소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구성	사회자,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등 사전 검토
전문(자문) 위원	토론회 진행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구성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등 자문

## 4 토론주제 선정

가. 시 기: 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 나. 선정절차

- 1)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토론 의제를 수집합니다.  
※ 여론조사, (지역)언론 보도, 정당·지자체·후보자 홈페이지(공약사항) 게시 내용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필요 시 전문(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 3)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주제(안)을 작성·검토합니다.
- 4) 토론회 참석 후보자(토론자)의 수 및 토론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토론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합니다.  
※ 1개 이상의 예비 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주제 공개: 토론회 개최 공표 및 설명회 개최 시

## 5 질문사항 선정

가. 주제 선정 후 해당 주제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여 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선정합니다.

나. 유권자의 관심이 많고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찬반 쟁점이 뚜렷한 사항을 위주로 질문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 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 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규정 §5②).

## 6 토론진행방식 결정

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후보자(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토론자) 간 상호토론**을 하는 방식,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토론자)가 일정 시간 토론 진행의 권한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또는 토론주제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후보자(토론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 **후보자(토론자) 간 발언시간**은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구체적인 진행방식과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합니다.

라.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규칙 §28①).

마. **토론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정 §4③).

## | 토론형식개관(예시) |

<p><b>토론회 개시</b></p>	<p>▶ 시작발언</p>	<p>후보자의 출마의 변, 핵심공약 등</p>
<p><b>본토론</b></p>	<p>▶ (주제·문제제기) 질문/답변 【질문자 및 질문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 공통질문 / 개별질문</li> <li>• 유권자 : 공통질문 / 개별질문(영상질문형)</li> <li>• 후보자 : 개별질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질문자)의 질문(선거 주요 쟁점, 정책 현안 등)에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방식</li> <li>• 유권자에게 각 후보자의 기본 입장 및 정책 등에 대한 개괄적 정보 제공</li> </ul>
	<p>▶ 후보자 상호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검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공약발표 후 1:1 자유토론</li> <li>-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li> <li>-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보충질문</li> </ul> </li> <li>• 주도권토론</li> <li>• 시간총량제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질문/답변, 반론/재반론 등을 통해 후보자 상호간 직접 토론하는 방식</li> <li>• 후보자 간 정책·공약 등의 쟁점 및 차별성 부각</li> </ul>
	<p>▶ 혼합형(사회자 질문 → 후보자 상호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li> <li>• 사회자 공통질문 후 주도권토론</li> <li>•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li> <li>•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회자 등 질문자의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변한 후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하는 형식</li> <li>• 후보자 간 정책·공약 등의 쟁점 및 차별성 부각</li> </ul>
<p><b>토론회 종료</b></p>	<p>▶ 마무리발언</p>	<p>지지호소, 발언내용 정리·보완 등</p>

## 7 설명회 개최

가.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토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1) 설명회 개최 시기는 토론 주제·진행방식 등을 공표한 이후로 하며, 참석 후보자(토론자)가 토론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2) 설명회에는 후보자(토론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토론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나. 안내 사항

- 1) 토론회 개최 일정, 참석 후보자(토론자) 및 사회자
- 2) 토론 주제·진행방식
- 3) 후보자(토론자) 준수사항
- 4) 토론회의 질서유지(출입제한 등)
- 5) 기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토론회 당일 일정, 분장이 필요한 후보자(토론자) 확인
  - 착용·부착물 및 지참물 관련 등
  - 토론회장 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 질서유지(방청객 제한, 출입증 배부 등)
  - 방송사 위치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



## 주요 안내 사항

### 1) 어깨띠 등 착용

- 단정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 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정 §8).

### 2) 참고자료 사용

- 토론회에서는 A3 용지규격(가로 42cm, 세로 29.7cm)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정 §9①).
- A3 용지 규격의 참고자료 사용 시 두 장 이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스튜디오 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코팅은 하지 않습니다.

### 3) 전자기기 사용

-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정 §9①).
- 다만,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정 §9②).
-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합니다(규정 §9③).

## 6) 토론회장의 설비내용 안내

- 무대 위에서 후보자(토론자) 및 사회자 등의 위치
- 후보자(토론자)와 사회자 대기실 및 분장실 등

## 7) 후보자(토론자)가 불참한 경우

- 토론회장 자리 등 설비 방법 : 후보자(토론자)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자리를 설비하지 않으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리 등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규정 §6③).
- 발언순서 등 : 불참한 토론자의 다음 순서가 순차적으로 앞당겨지며, 토론회가 시작된 후에 도착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다. 후보자(토론자)의 자리와 발언순서 추천

- 1) 후보자(토론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는 추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규칙 §23⑤).
  - 후보자(토론자)가 대리인에게 추천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토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토론자)를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 2) 먼저 후보자(토론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추천순서에 따라 후보자(토론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를 추천합니다.
- 3) 추천결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 후보자(토론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는 일괄하여 추천합니다.
- 개별질문 활용 시 후보자(토론자)별로 질문할 주제를 사전 추천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8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 가. 토론회의 진행

- 1) 토론회는 토론진행표(큐시트)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정 §10①).

- 2) 후보자(토론자)는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각급 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자)가 불참하거나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합니다(규정 §10③, ④).
- 3)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후보자(토론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후보자(토론자)의 마이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규칙 §30①).
- 4)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각급 토론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위원은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30②).
- 5) 후보자(토론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각급 토론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합니다.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규칙 §30③).

## 나. 질서유지

- 1) 후보자(토론자)를 제외하고 토론회장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방청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증을 후보자(토론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발급합니다.
- 3) 청중이 있는 경우 청중은 토론회 진행 중에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정 §7②).



## 9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 가. 개최 요건

- 1)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규칙 §24㉠).
  - 초청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명뿐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
  -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초청 후보자의 수가 초청 후보자 수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 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최 요건 중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공영방송사·지상파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 시설·장비의 불비 등을 이유로 연설회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2) 또한,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초청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이하 '초청 외 후보자'라 함)를 대상으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규칙 §23㉠).

## 나. 개최방법

### 1) 개최일시 등 결정·통지

-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사유 발생 시에는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주관방송사, 연설시간, 후보자명을 결정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주관 방송사에 통지합니다(규칙 §24②).

※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한 후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통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후보자의 연설시간은 중계방송시간 이내에서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후보자 마다 10분 이내로 결정합니다(법 §82의2③).

### 2) 사회자 선정

-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한 자 중에서 연설회 개최일전 2일까지 선정합니다(규칙 §23③).

※ 토론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3) 연설순서 추천

- 설명회 개최 시 또는 연설회장에서 추천합니다.



#### 연설순서 추천 방법(규칙 §24④)

-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추천순서에 따라 연설 순서를 추천합니다.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후보자 위임장 제출)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합니다.

### 4) 합동방송연설회의 진행

- 사회자는 연설회 방송 시작 시 개시를 선언하고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연설 시간·진행요령 등을 공표합니다.

- 사회자는 후보자가 연설하기 전에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성명을 소개합니다.
  - 연설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회자가 제지하거나 마이크를 끄는 등 조치를 취합니다.
  - 사회자는 마지막 후보자가 연설을 마치면 연설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 후보자가 연설할 때에는 후보자(수어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를 포함)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표기) 및 성명을 방송자막으로 표출합니다.
- 5) 개최공표·홍보, 질서유지 관련 사항 등은 토론회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The image features a solid purple background. Overlaid on this are several overlapping circles of varying shades of purple and light blu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Inside this white rectangle, the number '04' is displayed in a bold, dark purple, sans-serif font.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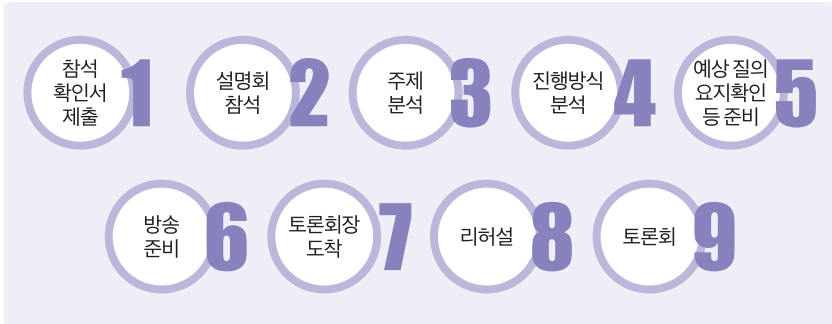
## 제4장

# 후보자(토론자)의 토론회 준비 및 참석

1. 참석확인서 제출
2. 설명회 참석
3. 토론 진행방식 숙지
4. 토론회 준비(이미지 메이킹)
5. 토론회장 도착
6. 리허설 및 최종 점검
7. 토론회 진행

제4장은  
후보자(토론자)의 토론회  
준비 및 참석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1 참석확인서 제출

가. 토론위원회로부터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통지받은 후보자(정당)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2024. 3. 29.)까지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23②).

- 기한 내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 토론회 개최일 다음 날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책자 45쪽 ‘참석확인서’ 및 46쪽 ‘불참사유서’ 참조

나. 제출한 불참사유서를 토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토론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되는 때에 사회자의 멘트와 방송자막으로 고지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법 §82의2 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261㉓).**



**용어의 이해 : ‘대담’과 ‘토론’(법 §81㉔)**

- 대담 :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
- 토론 :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



##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개최일시

3. 대담·토론회 참석자

가. 참석자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나. 성명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후보자)·(대담·토론자)	○○○	인	]
	○○○ 당 대표자	○○○	직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담·토론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대답·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대답·토론자) 성명

위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른 대답·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년 월 일

(후보자)·(대답·토론자)    ○○○ 인  
○○○ 당 대표자            ○○○ 직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 설명회 참석

가. 후보자(토론자)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토론회 진행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 후보자(토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합니다.
-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본 책자 48쪽 참조)'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은 후보자(토론자)에게 토론위원회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전달합니다.

### 나. 후보자(토론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 추첨(규칙 §23⑤)

- 1) 후보자(토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추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토론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 2) 먼저 **후보자(토론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서를 추첨하고,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자(토론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를 추첨합니다.



#### 설명회 내용

-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 토론회 참석 후보자(토론자) 및 사회자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 토론회장 후보자(토론자)의 자리와 발언순서 추첨
- 토론회 진행 시 후보자(토론자) 준수사항
- 기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토론회 당일 일정, 분장이 필요한 후보자(토론자)
  - 착용·부착물 및 지참물 관련
  - 토론회장 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 질서유지(방청객 제한, 출입증 배부 등)
  - 방송사 위치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
  - 토론회장 무대 위 후보자(토론자)와 사회자 위치, 대기실 및 분장실 위치

## 대담·토론회 좌석(발언순서) 추천 위임장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후보자(대담·토론자)와의 관계 :
5. 연 락 처 :

위의 사람에게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있어 토론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대담·토론자)(후보자) ○○○ (인)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 “대담·토론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3 토론 진행방식 숙지

#### 가. 토론 진행방식의 이해

- 1) 설명회에는 후보자(토론자)가 직접 참석하여 토론회 진행방식 등에 대해 안내 받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후보자(토론자)가 진행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전달해야 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토론위원회에 문의합니다.



#### 부적절한 사례

OO후보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해 토론 중 본인의 발언 순서(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자에게 진행방식 등을 계속 물어봄.

#### 나. 주요 토론형식

##### ◎ 사회자 공통질문·개별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모든 후보자(토론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며, '개별질문'은 후보자(토론자)별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주어지는 질문임.
  - ※ 토론회 개최 전 설명회에서 추첨으로 정해진 각 후보자(토론자)의 자리 및 발언순서 등을 확인함.
  - ※ 녹화영상 등을 통해 사회자 대신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음.

### ◎ 후보자(토론자) 주도권토론

- ‘주도권토론’은 후보자(토론자)들이 번갈아 가며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토론 진행의 권한을 갖고 상대를 지명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임.  
※ 지목한 상대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이 부여된 후보자(토론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며, 지목한 상대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함.

### ◎ 시간총량제토론

- ‘시간총량제토론’은 각 후보자(토론자)에게 주어진 총 발언시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상호토론 방식임.  
※ 시간총량제토론에서 첫 번째로 발언할 후보자(토론자)를 사전추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거수 등으로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발언함.

### ◎ 혼합형(사회자 질문 + 주도권토론 또는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개별질문과 후보자(토론자) 주도권토론 또는 시간총량제토론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임.

### ◎ 공약검증토론

- ‘공약검증토론’은 후보자(토론자)가 토론 분야나 주제에 대해 주어진 시간 동안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발표한 공약에 대해 다른 후보자(토론자)들과 질문·답변, 반론·재반론 등을 통해 상호토론을 하는 방식임.  
※ 공약발표 후 상호토론에서는 질문·답변 순서와 시간이 정해진 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1:1 시간총량제토론 방식도 활용되고 있음.

## ◎ 시작발언·마무리발언

- 시작발언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출마의 변, 핵심 공약 등을 알리는 지지 호소 연설
  - 마무리발언 : 토론회 종료 직전 토론 과정에서 주장했던 주요 내용을 보완·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 ※ 특히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은 주어진 시간 안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함.

## 4 토론회 준비(이미지 메이킹)

### 가. 의상

- 1) 토론회 방송에 적합한 의상을 선택하되,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 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정 §8).
- 2) 다음의 의상은 텔레비전 방송의 특성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나치게 밝은색
  - 잔 체크무늬나 가는 줄무늬가 들어간 의상이나 넥타이 등
  - 스튜디오 조명에 반사되는 질감의 의상
  - 토론회장 세트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의 의상

### 나. 비언어적 표현



####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내용 및 전달력 등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시선, 제스처(몸짓·손짓) 등 ‘비언어적 표현’(몸짓 언어) 또한 중요합니다.

## 1) 시선

-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직시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수많은 유권자들과의 눈 맞춤을 의미하며, 이는 선거방송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비언어적 표현 수단입니다.

※ 촬영 중에는 ‘탈리 램프’<sup>1)</sup>가 들어옵니다.

- 토론 중에는 상황에 맞게(자연스럽게) 사회자 또는 상대 후보자(토론자)를 보며 발언을 합니다.

※ 미리 준비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발언할 시 ‘참고자료’에만 시선을 두고 읽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2) 표정

-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유지하며, 흥분하거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확신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 3) 자세

- 앉은 자세는 대개 정자세로 정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몸의 긴장을 풀고 허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손동작이 가미되면 자연스럽게 보이나, 지나친 경우 산만한 느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좌식 토론의 경우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체를 의자 등받이에 밀착하며, 입식 토론의 경우에는 다리의 움직임도 신경 써야 합니다.

## 4) 말하기 속도, 목소리의 높낮이

- 말의 속도와 목소리의 높낮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1) 탈리 램프(tally lamp) : 생방송 또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시 촬영하는 카메라를 출연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카메라의 위쪽이나 앞쪽에 부착하는 램프.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하면 빨간색 불이 켜짐.



-방송에서는 긴장하여 말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5) 제스처

-양손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내용에 맞는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특히 상대 후보자(토론자)에 대한 제스처는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5 토론회장 도착

가. **토론회 개최 장소**에는 교통체증 가능성, 분장 및 리허설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토론위원회에서 안내한 시각에 맞추어 도착합니다.

나. 분장을 하고 후보자(토론자) 대기실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최종 점검**합니다.

다.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회자 및 상대 후보자(토론자)와 인사를 하면서 긴장을 풉니다.



#### 스튜디오 입실 후 확인할 기본사항

- 추첨순서에 의한 본인의 자리 위치
- 참고자료 규격(A3 용지규격 이내)
- 카메라 및 발언시간 타이머 모니터 위치 등

## | 후보자(토론자)와 사회자의 자리 배치 예시 |



마주보는 구조(좌식)



마주보는 구조(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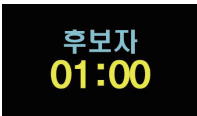
삼각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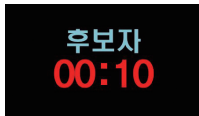
일자형 구조

## | 발언시간 타이머 표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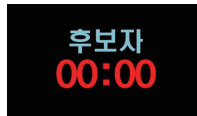
-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 마무리발언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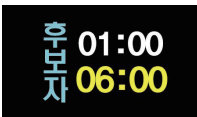


[종료 10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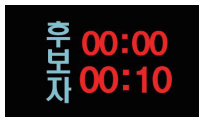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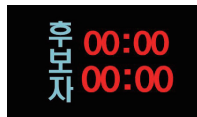
- 시간총량제토론



[초기화면]



[종료 10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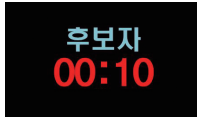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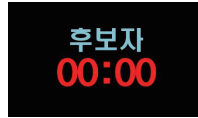
- 주도권토론의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토론자)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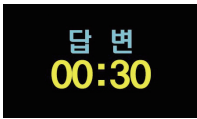


[종료 10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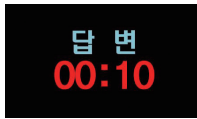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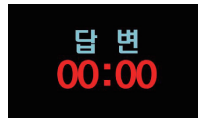
- 주도권토론 답변 후보자(토론자) 답변시간



[초기화면]



[종료 10초전]



[종료]

## 6 리허설 및 최종 점검

가. 후보자(토론자)는 리허설을 통해 토론회 진행방식 및 발언시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사회자나 토론위원회 또는 방송사 관계자가 안내하는 사항을 경청합니다.

나. 자리에 메모지, 필기구 및 생수 등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복장, 마이크 착용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합니다.

라. 진행방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리허설을 마친 후 사회자나 토론위원회 또는 방송사 관계자에게 반드시 확인합니다.

※ 토론이 시작되면 진행방식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 리허설의 필요성

- 사회자와 후보자(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송사 스태프와 카메라, 마이크, 음향 및 스튜디오 설비 등을 활용하여 본 토론회와 똑같은 조건에서 합니다.
- 후보자(토론자)들이 각자 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간단한 말을 하도록 하면서 마이크와 오디오 상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정합니다.
- 리허설을 통해 후보자(토론자)는 목소리, 표정, 자세, 몸짓 등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토론자)는 자신을 전담하여 촬영하는 카메라가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토론회 진행

**가. 사회자가 오프닝 멘트에 이어서 후보자(토론자)를 소개하면** 지정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나. 토론회 방송이 시작되면 후보자(토론자)의 마이크는** 계속 작동 중이므로 기침소리 등 잡음이 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다. 선거방송토론은 발언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설치된 타이머 모니터의 잔여시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 발언시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토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정 §10①).

**마. 후보자(토론자)는**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규정 §10조③).

**바. 후보자(토론자) 상호토론 시** 발언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을 가볍게 들어 발언 의사를 표현합니다.



#### 토론 중 유의사항

- 배정된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 다른 토론자가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 주제나 질문사항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발언하지 않습니다.
-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토론회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 토론위원회 관계자 또는 사회자의 제지나 중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05**



## 제5장

# 참고자료

1.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예시
2. 토론진행표(큐시트) 예시
3. 사회자 대본 예시
4.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 1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예시

 2명

 5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 후보자(각 2분)</li> </ul>	4분
사회자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현안) ○○시 균형발전</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2분)</li> </ul>	4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저출생에 대한 방안</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2분)</li> </ul>	4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청년실업 해결방안</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2분)</li> </ul>	4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공공임대주택 문제</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2분)</li> </ul>	4분30초
<공약검증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보충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공약</li> <li>· B 후보자 공약발표(2분)</li> <li>· A 후보자 개별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2분)</li> <li>· A 후보자 보충질문(1분) → B 후보자 보충답변(2분)</li> <li>· A 후보자 공약발표(2분)</li> <li>· B 후보자 개별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2분)</li> <li>·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2분)</li> </ul>	16분
예비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li> </ul>	-
마무리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 후보자(각 1분30초)</li> <li>※ 예비질문 사용 시 발언순서 변경</li> </ul>	3분



토론회 전반부는 지역현안 등을 중심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하고, 중반부는 후보자 공약발표후 개별보충 질문으로 공약검증토론 방식으로 구성한 사례임.



2명



7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 후보자(각 2분)</li> </ul>	4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구만의 차별화된 지원 방안</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li> <li>·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li>·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ul>	7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 주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li> <li>·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li>·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ul>	7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심 지역과 재개발 지역의 주거환경 등의 격차 해소 방안</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li> <li>·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li>·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ul>	7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공원내 체육(또는 운동)시설의 확충방안</li>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li> <li>·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li>·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ul>	7분30초
<공약검증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보충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공약</li> <li>· B 후보자 공약발표(2분)</li> <li>·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li> <li>·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li>· A 후보자 공약발표(2분)</li> <li>·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li> <li>·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ul>	12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후보자 개별보충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li> <li>•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li>•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li> <li>•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li> </ul> </li> </ul>	8분
예비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안정과 주거문제 해소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li> </ul> </li> </ul>	-
마무리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 후보자(각 2분)</li> <li>※ 예비질문 활용 상황에 따라 발언순서 변경</li> </ul>	4분



모든 형식에서 질문·답변시간을 정해놓았고,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 보충질문 형식을 구성함.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은 2분, 개별·보충 질문은 30초, 나머지 답변은 1분30초로 하여 시간 혼동을 줄이고자 한 사례임.



3명



7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C 후보자(각 1분)</li> </ul>	3분
<p>&lt;공약검증토론&gt;</p> <p>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li> <li>C 후보자 개별질문(50초) → B 후보자 답변(1분)</li> <li>A 후보자 개별질문(50초) → B 후보자 답변(1분)</li> </ul> </li> <li>● C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후보자 개별질문(50초) → C 후보자 답변(1분)</li> <li>B 후보자 개별질문(50초) → C 후보자 답변(1분)</li> </ul> </li> <li>● A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후보자 개별질문(50초) → A 후보자 답변(1분)</li> <li>C 후보자 개별질문(50초) → A 후보자 답변(1분)</li> </ul> </li> </ul>	15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공통질문(1분) → C/A/B 후보자 답변(각 2분)</li> </ul> </li> </ul>	7분
사회자 개별질문 (사전 주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및 보육 복지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li> </ul> </li> <li>● 해안경관의 자연친화적 개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li> </ul> </li> <li>● 청년 인구 유출 대책 및 유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30초)</li> </ul> </li> </ul>	6분
후보자 주도권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A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7분)</li> <li>※ 가급적 1분 이내 질문·답변</li> </ul> </li> </ul>	21분
예비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행정구역 통합 의견 및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40초)</li> </ul> </li> </ul>	
마무리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B 후보자(각 1분30초)</li> </ul>	4분30초



토론 전반부는 후보자 공약검증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추첨으로 결정된 사회자 개별질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자 한 사례임.



4명



10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후보자 공약발표 후 시간총량제 토론	<p>● 주제1</p> <p>• B/C/D/A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후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5분 총량)</p>	26분
	<p>● 주제2</p> <p>• C/D/A/B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후 C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5분 총량)</p>	26분
	<p>● 주제3</p> <p>• D/A/B/C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후 D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5분 총량)</p>	26분
마무리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30초)	4분

## 2 토론진행표(큐시트)<sup>2)</sup> 예시

번호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고
1	타이틀	• 타이틀	10초		VCR	
2	오프닝	• 사회자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1분 30초	17:35:00	MC/ S/T	○○○ 사회자
3	토론규칙 등 설명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1분	17:36:30		
4	시작발언	• 사회자 Bridge - A/B/C 후보자 시작발언(각 1분)	3분30초	17:37:30	S/T	
5	사회자 공통질문	1. <지역현안> • 사회자 공통질문(1분)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11분	17:41:00	S/T	A후보자 (정당명)
		2. <노인복지공약> • 사회자 질문(1분)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	후보자 개별질문	<자유주제> A후보자 개별질문(1분) → B후보자 답변(1분30초) / A후보자 개별질문 (1분) → C후보자 답변(1분30초) / B후보자 개별질문(1분) → C후보자 답변(1분 30초) / B후보자 개별질문 (1분) → A후보자 답변(1분30초) / C후보자 개별질문(1분) → A후보자 답변(1분30초) / C후보자 개별질문 (1분) → B후보자 답변(1분30초)	15분	17:52:00	S/T	B후보자 (정당명)  C후보자 (정당명)
7	사회자 공통질문	3. <지역경제활성화공약> • 사회자 공통질문(1분)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5분30초	18:07:00	S/T	

2) 큐시트(cue-sheet) : 큐시트는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진행표로 방송 시작에서 종료까지 카메라, VCR, 음향 담당자 등 제작 스태프들이 해야 할 일을 시각적으로 도표화한 것입니다.

번호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고
8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 질문	<p>&lt;자유주제&gt;            C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 (1분30초)            C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            자 보충답변 (1분)            A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 (1분30초)            A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 (1분)            B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 (1분30초)            B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 (1분)</p>	21분	18:12:30	S/T	
	사회자 공통질문 (예비 질문)	<p>4. &lt;국민소환제도&gt;            • 사회자 공통질문(1분)            → A/B/C 후보자 답변 (각 1분30초)</p>	4분30초	-	S/T	
9	마무리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Bridge</li> <li>- A/B/C 후보자 마무리발언(각 1분) (예비질문 사용 시 발언순서 B/C/A) ※ 시간이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가능</li> </ul>	3분30초	18:33:30	S/T	
10	클로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li> </ul>	1분	18:37:00	S/T F.S	
11	타이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딩 타이틀</li> </ul>	10초	18:38:00	VCR	

### 3 사회자대본 예시

2024. O. O (17:30~18:45)개최, OO선거구 후보자토론회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1	타이틀	10초		CG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OO선거구) 후보자토론회 # 주관 : OO선거 방송토론위원회
2	오 프 닝	17:30:00 ~ 17:31:30 (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li> <li>“제22대 국회의원선거(OO선거구) 후보자토론회” 사회를 맡은 OOO입니다.</li> <li>이제 선거가 O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li> <li>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li> <li>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는 초청대상 후보자 세분이 참석하셨습니다.</li> <li>사전에 추천된 순서대로 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li> </ul>	사회자	- 사회자 : OOO  • 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국회 소속의원 5인 이상 정당 추천 - 직전선거 득표율 100분의 3이상 정당 추천 - 최근 4년 이내 선거의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 언론기관 여론조사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호 3번, (정당명) A 후보입니다.</li> </ul>	A 후보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호 2번, (정당명) B 후보입니다.</li> </ul>	B 후보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호 1번, (정당명) C 후보입니다.</li> </ul>	C 후보	- C 후보자(정당명)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3	진행방식 설명	17:31:30 ~ 17:32:30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대 국회의원선거(00선거구) 후보자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li> <li>•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발언을 듣고,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요,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개별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자유지정하여 개별질문을 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li> <li>•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토론 후에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li> <li>•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li> <li>•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li> </ul>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진행방식</li> <li>- 시작발언</li> <li>- 사회자 공통질문</li> <li>- 후보자 개별질문</li> <li>-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li> <li>- 주도권토론</li> <li>- 마무리발언</li> </ul>
4	시작발언	17:32:30 ~ 17:36:00 (3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후보자들에게 시작발언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li> <li>• A 후보자부터 시작발언 시작해주시고. ☞ (정당명) A 후보 시작발언(1분)</li> <li>• 다음은, B 후보자 시작발언입니다. ☞ (정당명) B 후보 시작발언(1분)</li> <li>• 마지막으로 C 후보자 시작발언입니다. ☞ (정당명) C 후보 시작발언(1분)</li> <li>• 네, 세 분의 시작발언 잘 들었습니다.</li> </ul>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후보자(정당명)</li> <li>- B 후보자(정당명)</li> <li>- C 후보자(정당명)</li> </ul>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5	사회자 공통 질문	17:36:00 ~ 17:47:00 (1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li> <li>첫 번째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li> <li>앞으로 OO지역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가능해 볼 수 있도록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li> </ul>	사회자	주제 : 지역현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질문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보자당 답변시간은 1분30초입니다. 답변은 B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li> <li>☞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으로 C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지막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li> <li>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li> </ul>	사회자	주제 : 지역현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질문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보자당 답변시간은 1분30초입니다. 답변은 C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li> <li>☞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지막 B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li> </ul>	사회자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6	후 보 자  개 별 질 문	17:47:00 ~ 18:03:00 (1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서 후보자간 개별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토론주제는 자유입니다.</li> <li>• 후보자당 기회는 한번씩 주어지고, 질문 시간은 1분, 답변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li> </ul>	사회자	- 토론주제 :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럼 먼저, A후보자부터 B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질문(1분)</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B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후보자는 C후보자에게 개별질문 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질문(1분)</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C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으로 B후보자, C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질문(1분)</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C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후보자는 A 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질문(1분)</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A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지막, C 후보자 A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질문(1분)</li> </ul>		- C 후보자(정당명)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6	후 보 자 개 별 질 문	17:47:00 ~ 18:03:00 (1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을 받은 A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후보자는 B 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질문(1분)</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을 받은 B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li> </ul>	사회자	
7	사 회 자 공 통 질 문	18:03:00 ~ 18:08:30 (5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OOOO”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li> </ul>	사회자	주제 : OO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질문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답변은 B 후보자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C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지막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li> </ul>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 여러분께서는 OO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OO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li> </ul>	사회자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8	후 보 자  자 유 지 정  개 별 질 문 후  보 충 질 문	18:08:30 ~ 18:20:30 (1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에는 후보자로서 자질과 공약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li> <li>•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li> <li>• 한 질문당 주어진 시간은 역시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고,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li> </ul>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주제 : 후보자 자질 및 공약</li> <li>- 진행방식 :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럼, C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C 후보 질문(30초)</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C 후보 질문(30초)</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으로, A 후보자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A 후보 질문(30초)</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A 후보 질문(30초)</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지막으로, B 후보자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B 후보 질문(30초)</li> </ul>		- B 후보자(정당명)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li> <li>☞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li> <li>☞ (정당명) B 후보 질문(30초)</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li> <li>☞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li> </ul>	사회자	
9	마 무 리 발 언	18:39:30 ~ 18:43:00 (3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지막 순서, 마무리발언입니다.</li> <li>※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면 마무리발언 시간조정</li> <li>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li> <li>먼저, B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십시오.</li> </ul>	사회자	- 마무리발언 : 각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후보 마무리발언(1분)</li> </ul>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li> <li>☞ C 후보 마무리발언(1분)</li> </ul>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li> <li>☞ A 후보 마무리발언(1분)</li> </ul>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렇게 해서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li> </ul>	사회자	
10	클 로 징	18:43:00 ~ 18:44:00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li> <li>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li> <li>○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 후보자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li> <li>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li> </ul>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크롤 자막</li> <li>- 위원장</li> <li>- 위원, 사무국장</li> </ul>

## 4 선거방송토론 법규

###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2022. 1. 2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4.30.>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07.1.3., 2008.2.29., 2009.7.31., 2010.1.25.>

-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 ③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1. 대통령선거
  -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 1.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18. 4. 6.>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22. 1. 21.>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 8. 4., 2022. 1. 21.>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0.12.29.>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3.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4.6., 2022.1.18.>

【별표 3】-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22.1.26>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의5.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 3·법 제82조의2제4항	1,000	가. 매회: 1,000

## 「정당법」

[시행 2024. 1. 2.][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9.][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7호, 2024. 1. 1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12. 23., 2022. 1. 26.>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0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26.>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 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0.>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9.11.22., 2022.1.26.>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등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등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 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0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각급 토론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토론기획팀과 방송토론팀을 둔다. <개정 2018. 1. 19., 2024. 1. 19.>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2018.1.19.>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특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19.>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과 2명 이내의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 1. 19., 2023. 7. 31.>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② 간사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9., 2019. 11. 22., 2021. 10. 22., 2023. 7. 31.>

③ 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8.1.19.]

##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3. 7. 31.>

###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2019.11.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 4. 6.>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회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회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회위원회”는 “중앙토론회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회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1. 삭제 <2022. 1. 2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 2. 발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2021. 9.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6항에 따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토론회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토론회(후보자, 해당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와 토론회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초청대상 정당의 변경 또는 토론자의 불참 통보 등으로 참석 예정인 토론자 수가 달라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 제3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참석 대상 후보자·정당(이하 “후보자·정당”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 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등 기타 토론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개정 2021.9.23.>

② 토론회장은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공정하게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토론위원회는 후보자·정당이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정당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개정 2021.9.23.>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 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토론자가 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한 표시물(소속 정당의 배지를 제외한다)을 착용·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개정 2017.1.23.>)**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3., 2018.1.1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2.24.>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 “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개정 2021.9.23.>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③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경우 방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막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2조(재방송 및 다시보기<개정 2019.12.24.>)**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하거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19.12.24.]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삭제 <2021.9.23.>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판 발행 | 2024년 2월

발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Tel. (02) 3299-3827

디자인·인쇄 | 렛츠디자인 (031) 291-8658



열린 토론 바른 선택



유튜브



홈페이지

